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33

발의연월일: 2020. 8. 21.

발 의 자:성일종・이종배・이종성

이 용・김상훈・김정재

송언석 · 김태흠 · 추경호

강기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있으나, 음악공연에 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안 제12조제2항).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음반등"을 "음악공연 및 음반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
원) ① (생 략)	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	②
<u>등</u> 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u> 공연 및 음반등</u>
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	
작,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지	
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	
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